

<서 평>

국경을 넘는 네이션의 형성과 재생산*

- Jaeun Kim, 2016 *Contested Embrace*, Stanford University Press -

이 철 우**

1. 들어가는 말
2. “누가 무엇을 얻는가”보다는 “누가 무엇인가”를 묻다
3. 主權의 정치와 統治性的의 정치
4. 종족적 민족 관념에 대한 새로운 설명
5. 비판적 제언

1. 들어가는 말

김재은(Jaeun Kim)의 저서 *Contested Embrace: Transborder Membership Politics in Twentieth-Century Korea*(Stanford University Press, 2016)는 국경 밖에 거주하지만 집단적 自我의 일부로 취급되는 동포를 포함하여 超國境(transborder) 코리안 네이션이 어떻게 형성(made), 해체(unmade) 그리고 재형성(remade)되어 왔는지를 밝히는 신선한 연구이다.¹⁾ 이 저서의 연구사적 의의

* 이 서평은 2016년 10월 25일 서울대학교 규장각한국학연구원이 개최한 해외한국학 저자특강에서 저자 김재은의 저서 해설에 이어 지정서평자로서 발표한 내용을 바탕으로 한다. 당일 이루어진 토론을 짐작케 하기 위한 목적으로 수정을 최소화했다.

** 연세대학교 법학전문대학원 교수.

1) 이 글에서는 민족 또는 국민으로 번역되는 nation을 그대로 네이션으로 기재하면서 맥락에 따라 ‘민족’을 병용한다. 국민은 주로 citizen 또는 national(국적자)을 뜻하는 용어로 사용한다.

와 특징은 다음과 같이 요약할 수 있다.

① 디아스포라에 대한 미국 사회과학계의 연구에서 상대적으로 소홀히 해온 “소속(membership)”의 문제를 천착했다.

② 내셔널리즘, 내셔널 아이덴티티, 국민/인민 만들기 연구에서 그다지 주목하지 않은, 심지어 이주 연구에서도 상대적으로 중시되지 않아온 종족집단의 분류, 신원의 제도화, 이동규제의 행정적 실무에 주목했다.

③ 한인의 내셔널 아이덴티티를 “種族的(ethnic)”인 것으로, 한인의 내셔널리즘을 종족적 민족주의로 특징짓는 널리 유포된 담론에서 소거되기 쉬운 네이션 구성(construction)의 다이내믹스를 드러내는 한편 구성주의(constructivism) 네이션 담론이 가지는 “당연함 속의 진부함”을 극복하여, 종족성의 원리가 어떻게 여러 층위에서 이루어지는 실천의 자원(resources)으로 원용됨으로써 복합적이고 모순되지만 현저한 實在性을 가지게 되는지를 보여준다.²⁾

이하에서는 김재은이 다루는 주제에 대한 나의 연구 결과를 混入하면서 김재은 연구의 위와 같은 의의와 특징을 조명한다.

2. “누가 무엇을 얻는가”보다는 “누가 무엇인가”를 묻다

서론에서 김재은은 그간의 초국경 네이션 연구의 초점이 주로 “누가 무엇을 얻는가(who gets what)”의 문제에 고정되었고 “누가 무엇인가(who is what)”의 문제는 소홀히 되었음을 지적하면서 본인의 연구가 후자를 천착함을 목표로 한다고 선언했다(10면). 이와 같은 연구 목적의 설정은 본 저서의 중요한 일부를 이루는 저자의 한 선행 연구에서 이미 명시적으로 제시되었다.³⁾ 저자가 불만스럽게 생각하듯이, 시민권, 이주, 디아스포라 연구, 특히 해당 주제에 대한 미국

2) 구성주의적 네이션 담론의 “당연함 속의 진부함”에 대한 브루베이커(Rogers Brubaker)의 비판은 후술한다.

3) Jaeeun Kim, 2009 “The Making and Unmaking of a ‘Transborder Nation’: South Korea During and After the Cold War,” *Theory and Society* 38-2, pp.133-164.

학계의 연구는 대체로 이출이민(emigrants) 또는 디아스포라가 母國과 맺는 관계의 기능적 측면 - 전자는 후자로부터 무엇을 얻어내고 후자는 전자로부터 무엇을 얻어내는가 - 에 초점을 두는 경향을 보인다. “누가 무엇인가”를 연구하겠다는 저자의 의도는 이러한 기능적 측면, 그리고 그에 담긴 이익의 정치(politics of interest)보다는 안과 밖, 속함과 속하지 아니함을 가르는 경계의 설정과 멤버십의 정치(politics of membership)를 중심 주제로 삼겠다는 것이다.

시민권 및 네이션 연구에서 “누가 무엇인가”의 문제에 집중하는 연구가 상대적으로 불충분했음은 사실이지만, 구대륙을 소재로 한 연구에서는 그와 같은 연구가 꾸준히 이루어져 왔음은 부정할 수 없다. 대표적으로는 김재은의 박사논문 지도교수 브루베이커(Rogers Brubaker)를 비롯하여 새슨(Saskia Sassen), 욥커(Christian Joppke) 등이 경계의 설정과 소속의 제도화의 측면에서 시민권을 연구해왔고, 밀로나스(Harris Mylonas), 둠부라바(Costica Dumbrava) 등 젊은 학자들이 그러한 관심을 계승하고 있다.⁴⁾ 김재은은 그와 같은 “제도주의적” 연구 조류에 신선한 경험적 지식과 이론적 아이디어를 기증하는 한편 거시적인 제도 연구들이 놓치기 쉬운 행위주체성(agency)과 전략적 실천에 대한 미시 분석을 더함으로써 超國家性(transnationalism) 연구에 새로운 이정표를 제시하고 있다.

4) Rogers Brubaker, 1992 *Citizenship and Nationhood in France and Germany*, Harvard: Harvard University Press; 1996 *Nationalism Reframed: Nationhood and the National Question in the New Europe*, Cambridge: Cambridge University Press; 1998 “Myths and Misconceptions in the Study of Nationalism,” in John A. Hall, ed., *The State of the Nation: Ernest Gellner and the Theory of Nationalism*, Cambridge: Cambridge University Press; Saskia Sassen, 1996 *Losing Control? Sovereignty in an Age of Globalization*, New York: Columbia University Press; Christian Joppke, 2005 *Selecting by Origin*, Cambridge MA: Harvard University Press; 2010 *Citizenship and Immigration*, Cambridge: Polity; Harris Mylonas, 2012 *The Politics of Nation-Building: Making Co-Nationals, Refugees, and Minorities*, Cambridge: Cambridge University Press; Costica Dumbrava, 2014 *Nationality, Citizenship and Ethno-Cultural Belonging*, Basingstoke: Palgrave Macmillan. 물론 이들은 경험적 연구와 규범적 연구의 스펙트럼 선상의 서로 다른 위치를 점하며, 하나의 학파로 묶을 수 있는 것도 아니다.

3. 主權의 정치와 統治性的의 정치

김재은은 “누가 무엇을 얻는가”보다는 “누가 무엇인가”를 천착하겠다는 표현을 브루베이커의 저술로부터 차용했다.⁵⁾ 브루베이커는 그 저술에서 “누가 무엇인가”의 문제를 탐구하는 것을 “아이덴티티의 정치(politics of identity)”에 대한 관심과 동일시했다. 1992년에 출간된 브루베이커의 이 연구에서는 독일과 프랑스의 내셔널 아이덴티티를 시민적(civic)인 성격의 것과 종족적(ethnic) 성격의 것으로 대비시키면서 이 특성이 양국의 국적법이 보이는 血統主義(jus sanguinis)의 고수와 出生地主義(jus soli)의 수용이라는 특징을 가져오는 것으로 보았다. 이 저술에서 아이덴티티의 정치는 멤버십의 정치와 일치한다. 그러나 곧 브루베이커는 이러한 논의 구도에 담긴 이분법을 스스로 猛打하기 시작했다. 즉 시민적 네이션과 종족적 네이션의 이분법이 타당하지 않다는 점을 힘주어 말하면서 종족적 네이션 개념이 가지는 분석적 범주로서의 유용성을 부정하는 한편 시민적 네이션 개념에 전제된 문화적 경계와 영토적 경계의 일치화 경향이 결코 보편적 역사 경험이 아니라고 주장했다.⁶⁾ 문화적 경계와 영토적 경계의 불일치 현실은 영토국가의 강력한 民族化(민족만들기) 내셔널리즘(nationalizing nationalism)과 그 영토국가 내에 同胞(coethnics)를 둔 血緣國(kin-state)의 故國내셔널리즘(homeland nationalism)을 태동한다. 이 두 국가적 주체와 그 사이에 끼인 소수 민족의 3자(triadic) 관계가 어떻게 형성, 해체, 재형성, 전개되는가를 연구하는 것이 지난 20년간 브루베이커가 집중해온 과제였다. 김재은은 브루베이커와의 공동연구 및 독자적인 연구를 통해, 국민국가(nation-state) 중심의 세계체계에 서 결코 예외적이지 않은, 오히려 국민국가 그 자체가 가지고 있는 내재적 모순을 적나라하게 표출하는 사례들을 발굴함으로써 동 과제를 양적으로 확대하고 질적으로 심화했다.⁷⁾

5) Brubaker, 1992 *op. cit.*, p.182.

6) Brubaker, 1998 *op. cit.*

7) 브루베이커와의 공동연구로는 Rogers Brubaker and Jaeun Kim, 2011 “Transborder Membership Politics in Germany and Korea,” *European Journal of Sociology* 52, pp.21-75.

이 연구 작업의 질적 심화는 “누가 무엇인가”의 문제를 여러 층위에서 접근하는 것을 통해 이루어졌다. “아이덴티티의 정치”는 “멤버십의 정치”와 일치하지 않는다. 멤버십의 정치에서 무엇보다 중요한 것은 국민과 非국민, 안과 밖을 일도양단으로 가르는 “딱딱한 경계(hard boundaries)”에 대한 주권적 결정이다.⁸⁾ 누가 그 경계에 속하는가에 대한 결정은 그 경계에 스스로 속한다고 주장하는 사람들의 遂行的(performative) 發話 행위이다. 즉 국민은 자기들이 국민이라고 선언함으로써 스스로를 창출하며, 주권자는 주권의 행사에 의해 역으로 창출된다.⁹⁾ 이 패러독스는 先在하는 프로토네이션(protonation)과의 연속성이 상식 수준에서 認知되는 국가의 사례들,¹⁰⁾ 종족적 기원을 가지는, 정확히는 가진다고 믿어지는 네이션,¹¹⁾ “배꼽(navel)이 있는” 네이션에도¹²⁾ 타당하다.¹³⁾ 사실 모든 국가의 성원들은 선재하는 공동체와의 연속성을 당연시하는 이데올로기에 의해 자기의 멤버십을 정당화한다. 문제는 그 이데올로기에 따라 안으로 편입될 수 있는 사람들이 밖으로 배제되는 경우가 발생한다는 점이다. 역으로 편입에는 강제성이 수반된다. 이 편입과 배제의 기준을 설정하고 이를 집행하는 것이야말로 멤버십 정치의 가장 중요한 기능이다. 아울러 멤버십은 국민/非국민을 가르는 하나의 기준만을 가지는 것은 아니다. 문화적 경계와 영토적 경계의 불일치는 국민 내부의 집단을 종족적-문화적 경계에 의해 구획하는 것, 그리고 국가 내의

8) Shao Dan, 2009 “Chinese by Definition: Nationality Law, Jus Sanguinis, and State Succession, 1909-1980,” *Twentieth-Century China* 35-1, pp.4-28.

9) Chulwoo Lee, 2012 “How Can You Say You’re Korean? Law, Governmentality and National Membership in South Korea,” *Citizenship Studies* 16-1, p.87; Chaihark Hahm and Sung Ho Kim, 2015 *Making We the People: Democratic Constitutional Founding in Postwar Japan and South Korea*, Cambridge: Cambridge University Press, pp.44-65.

10) Eric J. Hobsbawm, 1992 *Nations and Nationalism Since 1780: Programme, Myth, Reality*, Cambridge: Cambridge University Press, p.66.

11) Anthony D. Smith, 1986 *The Ethnic Origins of Nations*, Oxford: Blackwell.

12) “배꼽”이 있다는 것은 한 근대국가의 국민이 근대 이전의 종족적 인구집단으로부터 도출되었고 그 연속성을 식별할 수 있는 경우를 뜻한다. Ernest Gellner, 1996 “Do Nations Have Navels?,” *Nations and Nationalism* 2-3, pp.366-370.

13) 이상의 패러독스를 인식하거나 설명하는 데 반드시 테리다적 해체주의에 의거할 필요는 없다. 자크 테리다(진태원 옮김), 2004 『독립선언들』 『법의 힘』, 문학과지성사 참조.

비국민을 상이한 범주로 구획하는 것을 수반한다. 또 영토 밖의 인민을 종족적-문화적 동질성을 이유로 포섭하는 새로운 범주를 창출하도록 요구하기도 한다(소위 에스니즌십의 창출).¹⁴⁾ 이처럼 국가는 인민을 여러 종류의 법적 범주로 분류하여 취급한다. 멤버십 정치를 탐구하는 것은 이러한 “분류국가(taxonomic state)”의 논리와 움직임을 포착하는 것이다.

인민집단을 안과 밖, 우리와 그들로 구획하는 분류의 작업은 주권의 작용이다. 그런데 멤버십의 정치는 이에 머무르지 않는다. 영토를 기준으로 인민집단을 단일한 범주로 파악하는 것을 넘어, 영토 내 인민을 분류하고 나아가 영토 밖의 인민에 대해서도 親疎에 따른 분류를 가하는 국가의 작용은 인구를 영토로부터 분리하여 독립된 실체로 파악하는 특별한 종류의 합리성을 요구한다. 분류국가는 푸코(Foucault 1991)가 말하는 統治性(governmentalization)의 확충, 국가의 統治化(governmentalization of the state)를 요한다. 그런 점에서 멤버십의 정치는 주권의 정치(politics of sovereignty)에 그치지 않고 통치성의 정치(politics of governmentality)를 수반한다.¹⁵⁾ 바로 이 점을 세밀한 사례 분석을 통해 부각시키는 작업이 김재은의 연구에서 가장 돋보이는 모습이다.

김재은은 멤버십의 정치에서 작용하는 통치성을 포착하는 데 푸코의 개념 못지않게 마이클 맨의 인프라권력(infrastructural power) 개념, 『국가처럼 보기』(Seeing Like a State)에서 보이는 스코트의 감수성, 부르디외의 상징권력 개념 등 여러 이론적 자원을 연료로 삼는다.¹⁶⁾ 여기에서 저자의 폭넓은 독서, 그리고 이론과 개념의 세련된 구사가 눈길을 끈다.

인민집단의 경계획정을 하부에서 집행하는 인프라권력의 행사는 서호철의 연구를 제외하고 논할 수 없다.¹⁷⁾ 한말-일제하의 주민등록제도에 대한 그의 치밀

14) 이철우, 2013 『동포우대정책의 정당성과 에스니즌십의 세계적 실태』 『동북아리뷰』 5-1, 고려대학교 아세아문제연구소.

15) Chulwoo Lee, 2012 *op. cit.*: 2015 “The Law and Politics of Citizenship in Divided Korea,” *Yonsei Law Journal* 6-1·6-2, pp.3-31.

16) Michael Mann, 1986/1993 *The Sources of Social Power*, 2 vols., Cambridge: Cambridge University Press; 제임스 스코트(전상인 옮김), 2010 『국가처럼 보기』, 예코리브르; Pierre Bourdieu, 1991 *Language and Symbolic Power*, Cambridge MA: Harvard University Press.

한 연구는 “통치화”해가는 근대국가가 인민을 하나의 총체(omnes)이자 개별자(singulatim)로 파악하면서 그들의 아이덴티티를 “카드와 코드에 奉安”해가는 과정을 체계적으로 보여주고 있는바, 김재은은 그러한 선행 연구를 흡수하여 어떻게 한인이 戶籍이라는 문서에 등재됨으로써 국가에 의해 판독가능한(legible) 존재로 鑄造되었는지를 설명하는 동시에 어떻게 그러한 문서에의 등재가 실제로 전환하여 편입과 배제를 결정하는 주된 근거로 작용하게 되었는지를 설명한다(제1장과 제4장).¹⁸⁾

멤버십이 주권국가의 “공식적 전망과 구획(vision and division)”에 그치지 않고 분류의 체계에 따라 인민을 취급하는 말단부의 실무에 좌우됨을 직시하고 그러한 행정의 집행을 소상히 분석하는 것이 저자의 연구가 지향하는 바이며 가장 큰 강점이다.¹⁹⁾ 한편 저자가 다루는 멤버십의 정치의 국가의 일방적인 권력 행사 또는 말단부 관리의 자의적인 “갑질”로 환원되지 않는다. 그것은 경계를 가로지르는 행위자들의 전략적인 실천을 조건짓고 그에 모습지어진다. 경계에 선 주체들의 身元 演出(presentation)에 대한 고프만적 미시 분석과 문서의 위변조, 신원의 조작, 위장결혼 등 소소한 약자의 무기(weapons of the weak)에 대한 현장적 묘사는 “누가 무엇인가”를 탐구하는 연구 중에서도 특히 발군의 입체성을 지녔다는 평가를 부른다.

카드와 코드를 통한 신원의 관리, 그리고 그에 근거한 멤버십의 판정에 10여 년 전부터 새로운 기법이 도입되었다. 네이션에의 소속을 주장하고 입증하기 위한 방편으로 활용되는 DNA검사는 가족관계를 신원의 토대로 삼고 있는 한국적

17) 서호철, 2007 『1890-1930년대 주민등록제도와 근대적 통치성의 형성: 호적제도의 변용과 ‘내무행정’을 중심으로』, 서울대학교 박사학위논문; 2008 『국민/민족 상상과 시민권의 차질, 차질로서의 자기정체성』 『한국문화』 41, 85-112면.

18) 김재은은 서호철의 논문과 함께 황경문의 연구를 활용했다. Kyung Moon Hwang, 2004 “Citizenship, Social Equality, and Government Reform: Changes in the Household Registration System in Korea, 1894-1910,” *Modern Asian Studies* 38-2, pp.355-387; 2007 “Nation, State, and the Modern Transformation of Korean Social Structure in the Early Twentieth Century,” *History Compass* 5-2, pp.330-346.

19) “전망과 구획(vision and division)”은 브루베이커로부터 차용한 용어로서 김재은이 즐겨 사용하는 분류국가(taxonomic state)의 개념과 상통한다.

생명정치(biopolitics)의 특수한 모습이다.²⁰⁾ 김재은은 이러한 입증방법이 입국만을 목적으로 혈연관계를 주장하거나 조작하는 데 활용됨을 지적하면서 이를 “도구주의의 原初主義的 옹호(primordialist defense of instrumentalism)”로 재치 있게 표현했다(203면). 생물학적 혈연관계에 대한 입증방법을 출입국 행정에 활용하는 현상에 주목하고 그 실태를 서술한 김재은의 연구는 국경관리의 변화하는 技法을 탐구하면서 移住 연구에서 “신체에 대한 관심으로의 전환(corporeal turn)”을 제창하는 소위 글로벌이동연구(global mobility studies)에 접맥되는 한편 국경의 횡단과 국경관리의 기술적 측면에 시야를 제한하는 글로벌이동연구의 지평을 넓히는 의의가 있다.²¹⁾

4. 종족적 민족 관념에 대한 새로운 설명

한국의 내셔널리즘을 종족적 민족주의로 규정하고, 외국국적동포에 대한 관심, 다른 한편으로는 이민자와 외국인에 대한 인종주의적 배타성을 그것으로 설명하는 言說은 한국의 公論場에서 매우 흔하다. 여기에는 두 가지 이론적 관점이 있는데, 하나는 종족적 민족주의가 제도에 선행하는 문화에 내재하고 있으며 이는 역사적으로 깊은 뿌리를 두고 있다는 스미스(Anthony Smith) 류의 종족상징론적(ethno-symbolic) 관점이고, 다른 하나는 종족적 민족 관념은 현실적 필요에 의해 만들어진 신화라는 근대주의적(modernist) 관점이다. 김재은은 전자를 명시적으로 비판하는 한편 후자는 결과적으로 극복해낸다.²²⁾ 명시적으로 두 관점의 극복을 표방해온 나와 김재은은 상당한 지대를 공유하고 있다.²³⁾

20) 중국동포국적업무처리지침을 대체한 2005년의 「외국국적동포의 국적회복 등에 관한 업무처리 지침」 제6조 제5호. 동 지침의 정확한 명칭을 기재했으면 좋았을 것이다.

21) Chulwoo Lee, 2012 *op. cit.*, p.86 참조.

22) 김재은이 구성주의/근대주의의 진영에 스스로를 포함시키고 있음(9-10면)은 이러한 지적과 모순되지 않는다.

23) 주제와 주장에서 많은 점을 공유하면서도 충분한 협력을 하지 못한 것은 아쉽다. 나에게 책임이 있다. 나의 연구 중 2009년 9월 한국사회사학회 등이 주최한 「민족공동체의 현실

첫 번째 관점에 대해, 나는 김재은과 마찬가지로 종족적 민족 관념이 한국의 내셔널 아이덴티티의 일부를 구성하기는 하지만, 그것의 기원을 근대 이전의 역사적 경험과 문화에서 찾을 것이 아니라 개인의 신원을 파악하는 통치성과 생명 정치의 작용 결과로 보아야 함을 지적했다.²⁴⁾ 개인의 신원이 가족관계를 통해

과 전망: 분단, 디아스포라, 정체성의 사회사』 학술대회에서 발표한 「韓人의 분류, 경계 획정, 소속 판정의 정치와 행정」은 2010년 같은 제목으로 『한국이민학』에 투고되었고, 같은 해 국제학술대회 발표를 거쳐 2012년 “How Can You Say You're Korean: Law, Governmentality and National Membership in South Korea”라는 제목으로 *Citizenship Studies*에 게재되었다. 이 연구는 김재은의 2009년 연구 “The Making and Unmaking of a ‘Transborder Nation’: South Korea During and After the Cold War,” *Theory and Society* 38-2, pp.133-164로부터 도움을 받았으나 2011년에 *Law and Social Inquiry*에 게재된 “Establishing Identity: Documents, Performance, and Biometric Information in Immigration Proceedings,” *Law & Social Inquiry* 36-3, pp.760-786으로부터는 도움을 받을 수 없었다. 동 논문이 출간되기 전에 최종 원고가 출판사에 넘어갔기 때문이다. 그러나 그 후 연구 주제는 다소 다르지만 같은 이론적 관점을 견지한 다른 논문(Lee, 2015 *op. cit.*)에서도 김재은의 2011년 논문을 참조하지 못한 것은 정당화될 수 없다. 시간상의 엇박자 때문에 김재은도 2011년 논문에서는 나의 연구를 참조할 수 없었다. 2009년에는 학술대회 발표에 그쳤고, 2010년 『한국이민학』에 투고된 원고는 해당 학술지의 한계로 전파되지 못하고 있기 때문이다. *Contested Embrace* 출간 전 저자는 나에게 원고를 보내고 논평을 구했으나 충분한 시간을 가지고 음미하여 의견을 제시하지 못했다. 서평으로서 아쉬움을 대신한다.

- 24) Chulwoo Lee, 2012 *op. cit.*; 2015 *op. cit.* “종족적 민족주의는 분명 대한민국 국민을 비롯한 한인의 정체성을 구성하는 주된 관념적 재료이다. 그러나 종족적 민족주의는 多層的 實在 중 한 층위를 구성할 뿐이다”: “종족적 민족주의라는 추상적 관념과 階序화된 민족(hierarchical nationhood)의 존재 현실 사이의 괴리, 그리고 그것들로 이루어진 다층적 실재를 복합적으로 탐구하려는 근래의 문제의식은 한인의 종족주의적 정체성을 새삼스럽게 강조하거나 그것의 타당성에 대해 왈가왈부하는 (脫)민족주의와 시민권 담론, 그리고 당위론적 동포정책 또는 그에 대한 규범적 비판 담론의 수준을 뛰어넘어 한인의 자기상상에 대한 현실인식을 풍요롭게 할 것으로 기대된다. [나의] 연구는 그러한 연구사적 진전에 가세하면서, 그동안 상대적으로 소홀히 되어온 포섭과 배제의 행정적 技法에 주목한다”: “혈통은 국민 지위를 규정하는 가장 주된 근거이다. 혈통에 의해 지위를 정하는 것이 전근대적으로 들리지만 부여의 대상이 국적일 때 그것은 面對面의 사회가 아닌, 匿名의 거대한 공동체에 속한 사람 개개인의 생물학적 뿌리를 추적하는 생명권력을 필요로 한다. 그것은 날 때부터 죽을 때까지 개인의 사정, 그리고 조상과 자손까지를 알고 기록하는 합리적 행정, 고도의 통치성에 기반하는 근대의 산물이다.” 이상 이철우, 2010 『韓人의 분류, 경계 획정 및 소속 판정의 정치와 행정』 『한국이민학』 1-2면·6-41면.

顯現하고 확인되는 특수한 등록의 제도는 소속의 주장과 관정의 근거로 객관적 혈연관계를 援用할 수밖에 없도록 하고 있는 것이다.²⁵⁾ 이는 재외동포법에서 외국국적동포를 혈통이 아닌 과거국적의 견지에서 정의하더라도 그 결과는 혈통주의와 마찬가지로 될 수밖에 없다는 사실에서도 나타난다.²⁶⁾ 가족관계를 바탕으로 개인의 신원을 등록하는 제도 설계의 이데올로기를 단순히 종족적 민족주의라 할 수 있을까? 이에 대한 김재은의 답은 아마도 yes, but일 것이다. 나도 마찬가지로이다.

첫 번째 관점에 대한 비판은 두 번째 관점에도 적용된다. 두 번째의 관점은 매우 투박한 구성주의적 설명을 동반한다. 그러나 “민족은 상상의 공동체이다”라는 당연한 명제만으로는 현실을 설명하는 데 도움이 되지 않는다. 브루베이커는 이 점을 다음의 말로써 지적한다.²⁷⁾ “구성주의는 그 성공 때문에 自足的, 심지어 상투적이 되었다. 한 때 통념에 대한 상큼한 도전이었던 것이 이제는 통념이 되었다.” “[구성주의는] 너무 뻔한, 너무 당연한 것이 됨으로써, 주장들을 앞으로 밀고 나가고 새로운 통찰력을 제공하기 위해 필요로 되는 마찰과 힘, 그리고 신선함을 제공해줄 수 없게 되었다.” 그러한 비판 위에서 브루베이커는 종족성을 발화하고 그 의미를 협상하는 일상적 소통의 과정을 상세히 서술한다. 김재은도 종족성을 담론적으로 실천하는 내러티브를 분석하고 있다. 그런데 탐구 대상의 익숙함 때문인지 김재은이 분석하는 사례들은 브루베이커가 소개하는 사례들보다 훨씬 재미있고 역동적이다.

25) 김재은은 혈연관계를 바탕으로 동포 지위를 인정하고 이를 입국과 체류의 요건으로 삼는 이민정책을 family-based immigration policy로 부르는데(174면), 이 용어는 가족 단위의 이주를 허용하는 이민정책을 표현하는 데 더 적합하여 오해를 줄 수 있다.

26) 오히려 “종족적 출신”을 명시적으로 소속의 기준으로 삼는 헝가리 재외동포법(Hungarian Status Law)의 동포 정의가 주관적 선택의 여지를 훨씬 넓게 제공한다. 이철우, 2010 앞의 논문, 26-28면; Chulwoo Lee, 2012 *op. cit.*, p.94.

27) Rogers Brubaker et al., 2006 *Nationalist Politics and Everyday Ethnicity in a Transylvanian Town*, Princeton: Princeton University Press, p.7.

5. 비판적 제언

그렇다면 김재은의 저서에서 소홀히 다루어진 사실이나 쟁점, 취약한 면모는 무엇인가? 누락된 사실이나 쟁점을 지적하는 것은 저자가 의도한 서술이나 연구 목적상 포함되었어야 할 것에 한정되어야 하며, 연구와 무관하거나 저자가 서술할 의도를 가지지 않았던 것을 지목하면서 누락되었다고 해서는 안 된다. 그러나 저자의 향후 연구 또는 연구자에 관계없이 같은 분야의 연구에 참고가 되도록 한다는 의도로 다음을 지적한다.

1) 딱딱한 경계(hard boundaries)는 별로 중요하지 않은가?

김재은은 “누구는 무엇인가”의 문제를 이루는 세 차원 - 주권의 정치, 통치성의 정치, 아이덴티티의 정치 - 를 공히 탐구의 대상으로 삼고 있다. 주권의 정치에 해당하는 현상에는 국민의 경계 설정, 집단적 배제의 행정, 디아스포라에 대한 정책의 수립과 집행, 상대국과의 교섭 등이 포함된다. 김재은은 이러한 주제들을 고루 다루고 있다. 그가 인용하는 자료는 역사적 사료에서 인근국의 공식 문서에 이르기까지 매우 폭넓고 심도 있다. 그런데 국민과 비국민을 가르는 경계의 설정, 즉 국적에 대한 자료의 활용에서 다소 소홀한 점이 눈에 띈다. 김재은은 일제하의 조선인이 호적을 매개로 대한민국 국민으로 전환하였음을 예리하게 지적하고 있으나, 대한민국이 그 국민의 요건을 공식적으로 어떻게 선언하였는지에 대해서는 다루지 않는다. 1948년 제정된 국적법과 그에 선행하는 『국적에 관한 임시조례』의 관계, 그러한 법령이 어떻게 해석되고 적용됨으로써 韓人이 대한민국 국민으로 인정받을 수 있는지에 대해서는 언급하지 않는다. 이 주제를 가장 처음으로 다루었고 으뜸의 권위를 인정받는 정인섭의 연구는 인용하고 있지 않다.²⁸⁾

28) 정인섭, 1988 『법적 기준에서 본 한국인의 범위』 『임원택교수 정년기념: 사회과학의 제문제』, 법문사; 1998 『우리 국적법상 최초 국민 확정기준에 관한 검토』 『국제법학회논총』 43-2, 235-248면. 정인섭의 연구 중에는 그가 편집한 『재외동포법』(2002 사람생각)에 실린 논문만이 인용되었다. 노영돈을 인용하고 있음은 국적 문제에 대한 관심을 보여주지

일제하 한인의 국적에 대한 인식에 대해서도 보완이 필요하다. 일제하 한인이 총체적으로 일본제국의 臣民으로서의 지위를 가지게 되었고 그들의 국적이탈이 불허되었다는 사실은 이 저서의 논의에 전제되어 있다. 그 근거로서 언급된 법령은 외국국적의 취득을 금지한 1908년의 통감부 법령이다. 외국국적 취득의 불허는 자발적 국적포기를 허용하는 일본 국적법에 대한 예외로 설명되었다(51면). 허가 없는 국적이탈 금지의 근거로서 오늘날까지도 언급되는 법령으로는 1900년의 依賴外國致損國體者處斷例가 있다. 일제 지배의 합법성을 인정하지 않는 입장에서는 이 법령을 거론하면서 일제하 해외 망명자들이 국적을 상실하지 않았음을 주장한다.²⁹⁾ 그러나 외국국적을 취득하는 것을 금지하는 것은 그 외국국적 취득의 효력을 이 나라가 승인하지 않는다는 데 불과할 뿐, 그리고 처벌 기타 제재가 있을 뿐, 그가 해당 외국국적을 취득하느냐의 문제는 국적을 부여하는 나라의 결단에 의하는 것이다. 그런 점에서 일제가 외국국적의 취득을 불허했다는 것은 중국이나 러시아에 귀화하여 유효하게 해당 국가의 국적을 취득했더라도 그를 외국인이 아닌 자국적자로 취급했음을 의미한다. 병합 후 일제는 일본 국적법의 적용 없이 한인을 일본국적자로 취급했고 그가 외국국적을 취득하더라도 일본국적을 이탈한 것으로 취급하지 않았다.³⁰⁾ 그 점에서 외국국적 취득에 따라 자동적으로 일본국적을 상실하게 되어 있는(자발적 국적이탈을 허용한 것이 아님) 국적법의 방침에 예외였다고 할 수 있다. 이는 시모노세키조약 체결 후 출국의 기회를 준 후 남아 있는 사람에게는 1899년 제정된 일본 국적법을 소급 적용한 대만의 경우와 차이를 보인다.³¹⁾ 재중한인과 재일한인의 국적 문제를 논할 때 법제에 대한 이와 같은 배경 지식을 제공할 필요가 있다. 한편

만 노영돈과 정인섭의 견해차가 중요함을 생각하면 정인섭의 문헌을 거쳐가지 않음은 부자연스럽다. 노영돈의 연구로는 1996 『우리나라 국적법의 몇 가지 문제에 관한 고찰』 『국제법학회논총』 41-2, 49-64면; 1999 『재중한인의 국적에 관한 연구』 『국제법학회논총』 44-2, 73-88면.

29) 이철우, 2010 앞의 논문, 15-16면.

30) 병합의 효과로서, 그리고 관습과 조리에 의해 그리되었다고 설명했다.

31) Edward I-te Chen, 1984 "The Attempt to Integrate the Empire: Legal Perspectives," in Ramon H. Myers and Mark R. Peattie, eds., *The Japanese Colonial Empire, 1895-1945*, Princeton: Princeton University Press, pp.245-246.

한일국교정상화 협상 때 한국은 을사조약과 병합조약 등이 소급하여 무효임을 주장하였고 그에 따라 한인의 일본국적 취득 자체를 부정했다는 점은 각주에서라도 언급할 필요가 없었을까?

저자는 재일한인(Koreans in Japan, Zainichi Koreans)의 범주 속에 朝鮮籍 한인은 물론 귀화한 사람도 포함하고 있다(25면). 그런데 재외동포 논의에서 재일동포는 특이한 성격을 가진다. 중국과 중앙아시아의 동포는 거주국의 국적을 취득한 외국국적동포인 반면 재미동포는 미국시민권을 취득한 외국국적동포와 재외국민으로 남아 있는 집단을 모두 포함한다. 재일동포도 넓게는 귀화하여 일본 국적을 취득한 사람과 그렇지 않은 사람을 모두 포함한다고 할 수 있지만 실제로 남북한의 정책과 재일한인을 대상으로 한 학문적, 정책적 논의는 일본국적을 취득하지 않은 사람만을 다루고 있는 점에서 특징적이다. 그런 점에서 재일동포는 국적을 불문하고 일본에 거주하는 모든 한인을 포함하는 廣義의 개념과 귀화하지 않고 대한민국 국적을 보유하거나 朝鮮籍으로 남아 있는 한민만을 지칭하는 狹義의 개념으로 구별해 봄직하다. 그와 같이 구별한다면, 김재은은 재일동포를 광의의 개념으로 정의하고 있는데, 실제로 재일한인을 분석할 때에는 귀화한 사람에 대해서는 거의 논의하고 있지 않다는 점에서 협의의 재일동포를 대상으로 하는 기존의 논의와 인적 범위에서 큰 차이가 없다. 그렇다면 재일한인을 정의할 때 귀화한 사람까지 포함한다는 분류방식이 어떤 의미를 가지는 것인지 궁금해진다.

한편 재중한인의 법적 지위에 대한 김재은의 인식은 정교하다. 헌법재판소는 중화인민공화국과 국교를 수립하는 1992년을 분기점으로 대한민국이 재중한인을 중화인민공화국 국적자로, 그리고 외국인으로 취급하였다고 보았는데 이는 특정 사건에서 정부가 방어용으로 제시한 의견을 받아들인 것에 불과하다.³²⁾ 나는 1997년 중국동포국적업무처리지침에 의해 법무부 실무가 바뀔 때 비로소 대한민국이 재중한인을 확정적으로 외국인으로 간주하기 시작했음에 주목해왔다.³³⁾ 그

32) 현재 2006.03.30. 2003헌마806. 결정문은 1992년부터 한국이 재중한인을 외국인으로 취급했음을 뒷받침하는 충분한 사실적 근거를 제시하고 있지 않다.

33) 이는 실무를 보여주는 법무부 내부자료, 그리고 위의 지침을 만들 때 법무부 법무과 검사로서 실무 일선에 있었고 후에 출입국외국인정책본부장이 된 석동현의 진술 등에 의거한다.

때까지 작동하던 영주귀국제도가 이를 말해준다.³⁴⁾ 김재은의 연구도 한국 정부의 이러한 미묘한 행정을 잘 포착하고 있다(181-182면). 이는 법무부가 행한 실무의 외견뿐만 아니라 부처 스스로 자기의 실무를 어떻게 보고 있는지를 알려주는 정보를 얻지 않으면 인지하기 힘든 사실로서, 저자가 이를 포착하였음은 중층적인 법적-행정적 규칙체계를 이해하는 감각을 갖추고 세심하게 정보를 취득했음을 말해준다.

한편 국적보다는 국가의 실질적인 인구 파악력, 즉 통치성의 강도를 기준으로 시대구분을 시도한 것은 딱딱한 경계를 중시하는 법학자의 관심과는 다른 면모이다. 滿洲國의 수립을 기준으로 시대를 구분한 것이 그것이다(제3장). 만주국은 별도의 국적제도를 가지지 못했으므로 만주국의 수립은 재만한인의 소속 변동에 관하여 볼 때에는 의미 있는 시대구분이 되지 못한다. 재만한인의 국적이 어떻게 변동되었는가를 보기 위해서라면 중국 국적법의 변동, 중국의 對韓人 국적정책 및 중일간의 조약(間島協約, 「남만주와 동부 내몽고에 관한 조약」, 三矢協定 등)을 시대구분의 기준으로 삼게 될 것이다.³⁵⁾ 다만 중국의 정책이 무엇이었던 중국국적 취득률이 낮았으므로 중국국적의 취득을 변화의 척도로 삼는 것은 부적합할지도 모르며, 그 점에서 일제의 분류체계로의 편입 정도를 기준으로 시대를 구분한 저자의 선택이 적절했을 수 있다.³⁶⁾

저자는 저서의 부제에서 초국경 “시티즌십”이 아닌 “멤버십”이라는 용어를 채택한 이유를 법적 시민권에 국한되지 않는, 보다 다양한 형태의 소속을 포섭하

34) 이철우, 2010 앞의 논문; Chulwoo Lee, 2010 “South Korea: The Transformation of Citizenship and the State-Nation Nexus,” *Journal of Contemporary Asia* 40-2, pp.230-251; Chulwoo Lee, 2012 *op. cit.*; 2015 *op. cit.*

35) 노영돈, 1999 앞의 논문; 박영석, 2010 『만주지역 한인사회와 항일독립운동』, 국학자료원, 제1부.

36) 김재은은 만주국을 통해 재만한인에 대한 통제를 강화하고 그들을 등록 시스템에 편입한 것에 두 가지 점에서 의의를 부여한다. 하나는 국경 밖의 인구에 대한 접근의 확대와 심화를 통해 식민지 국가의 인프라권력이 강화되었다는 점이다. 다른 하나는 일본제국주의 인프라권력의 심화와 확대 및 등록제도를 통한 재만한인의 편입은 코리안 네이션의 구축에 매우 중요한 경로였다는 것이다(제1장). 그러나 김재은도 인정하듯이, 재만한인의 호적 등재는 40년대 들어서도 60%를 넘지 못하는 수준이었다(64-65면 · 254면).

기 위함이라 밝혔다(8면). 사회학자로서 당연한 태도이며, 이 연구를 폭넓고 풍요롭게 하는 탐구 대상의 설정이다. 그러나 다양한 형태의 소속을 탐구하더라도 법적 시민권은 다른 멤버십의 중요한 조건을 이루는 사실로서 전제되어야 한다. 저자가 이를 소홀히 한 것은 아니지만 좀 더 상세한 배경 설명은 독자에게 도움이 되었을 것이다.

2) 북중관계와 재중한인의 이중적 소속의 문제

저서 제3장에서 저자는 많은 1·2차 자료를 분석했음은 물론 중국과 북한을 넘나든 경계인들의 생생한 진술을 바탕으로, 알기 어려운 사실들을 재생해내고 있다. 근래의 북한이탈을 중심으로 북중 국경을 연구한 사례와 북중 국경을 넘나드는 물자와 인력의 이동에 대한 연구는 있지만 북중간의 경계가 굳어져가는 과거의 역사적 과정에서 소속과 아이덴티티를 협상하는 행위자들의 생활세계를 탐구한 연구는 보지 못했다.³⁷⁾ 이를 높이 평가하면서 몇 가지 논평한다면 다음과 같다.

첫째, 저자는 재중한인에 대한 중국의 정책을 다룬 선행 연구의 부족을 호소하고 있다. 본인 스스로 새로운 1차 자료에 접근하는 적극성을 보이면서도 연구사의 조건으로 말미암아 설명적(explanatory)이라기보다는 탐색적(exploratory)인 연구에 머무를 수밖에 없음을 토로했다(129면). 그러나 선행 연구를 활용하기에 따라서는 보다 조밀한 서술이 가능하지 않았을까 생각해본다. 예를 들어, 저자는 중국의 조선족 정책을 연구 주제로 삼은 이진영의 저술 중 하나의 논문만을 참조하였는데,³⁸⁾ 이진영의 연구 중에는 중화인민공화국 정부수립 이후의 對韓人 정책을 탐구한 연구가 여러 개 있다. 한인 대책의 실질적 책임자였던 연변지방위원회 서기 劉俊秀(You Junxiu)의 회고를 비롯해 한인의 국적과 소속 문제를 주제로 한 중국공산당의 정책 담론들은 많은 시사점을 준다.³⁹⁾ 재중한인

37) 김성경, 2013 『북한이탈주민의 월경과 북·중 경계지역: '감각'되는 '장소'와 북한이탈여성의 '젠더'화된 장소 감각』 『한국사회학』 47-1, 221-253면; 강주원, 2013 『나는 오늘도 국경을 만들고 허문다』, 글항아리 참조.

38) 이진영, 2000 『중국 공산당의 조선족 정책의 기원에 대하여: 1927-1949』 『재외한인연구』 9, 161-187면.

에 대한 북한의 초기 접근과 북한의 對中國人 정책 사이에 상당한 연관관계가 있었음을 시사하는 김성보의 연구도 도움이 될 수 있다.⁴⁰⁾ 1948년 북한 헌법의 소수민족 규정과 공민의 범위에 대한 북한의 방침, 이를 통해 재중한국인에 대한 중국의 우호적 태도를 유도해내려는 의도에 대한 김성보의 해독은 양국의 소수민족 및 멤버십 정책이 상대방의 태도 및 정책과 무관하지 않았음을 시사하며, 혈연국, 거주국, 재외동포(소수민족)의 3자관계(triadic relationship)를 중심으로 민족정치를 탐구하는 브루베이커-김재은의 이론적 틀에도 잘 부합한다.

둘째, 북중간의 느슨한 경계와 이동가능성은 딱딱한 경계에 대한 사실인식과 병행하여 언급하는 것이 건설적이다. 김재은은 1960년대 중엽까지 북중간의 인적 경계가 단단하지 않았다고 보았다. 반면 이진영은 1957년을 전후한 시점을 북중간의 이중적 소속이 정리되는 시기로 보고 있다.⁴¹⁾ 이 시기의 사건 중 중요하다고 생각되는 것은 북중간 체결된 국적관련 협정이다. 이 협정의 결과 북중간의 이중국적이 차단되는 한편 朝鮮族과 朝僑의 경계가 확고해졌다고 알려져 있다.⁴²⁾ 한국 법원이 다룬 최초의 북한이탈주민 지위 관련 사건의 당사자인 한영숙이 중국에서 북한 공민(조교)으로서의 지위를 확정받게 된 것도 이 협정의 결과였다.⁴³⁾ 그런데 이 협정의 내용은 학계에 소개되어 있지 않으며, 본 서평자

39) Jeanyoung Lee, 1999 China's Policy towards the Korean Minority in China 1945-1995, Ph.D. dissertation, London School of Economics and Political Science; 2001 "The Korean Minority in China: The Policy of the Chinese Communist Party and the Question of Korean Identity," *Review of Korean Studies* 4-2, pp.87-131; 이진영, 2002 『조선인에서 조선족으로: 중국 공산당의 연변 지역 장악과 정체성 변화 (1945-1949)』 『중소연구』 26-3, 89-116면. 김재은이 인용한 김병호의 연구도 劉俊秀 등을 언급하면서 재중한국인의 법적 지위에 대한 중국공산당의 정책을 상술하고 있어 이진영의 연구와 크로스체크 및 보완을 위한 자료가 될 수 있다. 김병호, 1999 『중국의 민족이론정책과 법률에 있어서의 연변 조선족의 지위』 『평화연구』 8, 123-204면.

40) 김성보, 2009 『남북국가 수립기 인민과 국민 개념의 분화』 『한국사연구』 144, 69-95면. 이 연구도 앞에서 언급한 2009년 한국사회사학회 주최 『민족공동체의 현실과 전망: 분단, 디아스포라, 정체성의 사회사』에서 발표되었다.

41) Jeanyoung Lee, 2001 *op. cit.*, p.110.

42) 물론 조선족과 조교의 구별은 중국 호구를 가지느냐의 문제이고 그 구별은 1946년부터 시작되었다(133면).

43) Chulwoo Lee, 2015 *op. cit.*, pp.18-19.

도 이를 찾아보지 못했다. 이 협정이 체결된 시점은 중국이 비록 국적법을 제정하지는 않았으나 중국인의 경계를 제도적으로 선언하고 확고히 선을 그어가기 시작한 후였다. 1953년에는 선거법을 제정해 유권자를 확정했고 1954년에는 헌법을 제정해 국민의 권리를 규정했다.⁴⁴⁾ 김재은이 조명하듯이, 같은 시기에 중화민족 내 민족을 분류하는 작업이 이루어졌고 1954년에 조선족이라는 명칭이 공식화되었다(137-138면). 대외적으로는 이중국적을 청산하고 중국인의 경계를 제한하려는 정책도 등장했다. 동남아시아 화교에 대한 탄압을 우려한 중국은 인도네시아, 말레이시아, 태국과 협상을 통해 화교의 이중국적을 해소하려 했고, 1955년에는 이를 위해 인도네시아와 조약을 체결했다.⁴⁵⁾ 정치적으로는 1957년부터 反右派鬭爭을 벌이는 등 중국공산당의 동태가 변화하고 중국 사회가 격동하기 시작했음은 김재은도 잘 지적하고 있다. 이러한 상황에서 중국은 자국 내 한인에 대해서도 단일국적화를 지향하는 동력을 가지고 있었을 것이고 1957년의 조치는 그러한 맥락에서 나왔을 것이다. 북한도 이 시기에 상당한 변화를 겪었다. 1956년 소위 8월 종파사건으로 연안파와 소련파를 숙청하고 中蘇와 마찰을 빚는 상황이었다. 북한은 1957년 소련과 「이중국적자에 대한 협정」을 체결했다.⁴⁶⁾ 그 배경이 무엇이든, 1957년의 중국의 공식적 제도 변화는 북중 경계의 실질적 느슨함과 이를 이용한 다양한 전략을 포착하는 김재은의 연구와 일견 모순되는 것처럼 보이면서도 제도와 현실, 법과 실무 사이의 괴리를 보여주는 의미심장한 사실로 간주될 수 있다. 김재은이 묘사하는 “밑으로부터의 초국가성(transnationalism from below)”과 행정 실무는 상위에서 전개되는 공식적 정책의 변화와 관련지어질 때 더욱 입체적으로 이해될 수 있다.

다음은 경계에 서 있는 사람들에 대한 북한의 태도와 관련한 문제이다. 김재은은 중국과 북한을 넘나드는 한인의 소속에 대한 북한의 행정과 태도를 상세히

44) Li Buyun and Wu Yuzhang, 1999 “The Concept of Citizenship in the People’s Republic of China,” in Alastair Davidson and Kathleen Weekley, eds., *Globalization and Citizenship in the Asia-Pacific*, New York: St. Martin’s Press, pp.157-160.

45) Ibid., p.161.

46) 조정찬, 2001 「북한주민의 법적 지위에 관한 연구」 『2001년 남북법제연구보고서』, 법제처, 136면.

묘사하면서 잘 알려져 있지 않은 사실들을 소개하고 있다. 이에 자극되어 가지게 되는 의문은, 북한 내의 화교와 조선족 소속을 가지고 있다가 입북한 한인이 어떤 근거로, 그리고 어떤 절차에 따라 달리 취급되었는가이다. 본 서평자가 참여한 국내 무국적자 연구는 사실상의 무국적(de facto statelessness) 발생의 중요한 원인으로 탈북화교의 신원 불확실에 주목했다.⁴⁷⁾ 연구가 밝혀낸 탈북화교의 배경을 들어보면 그들이 초기에는 북한 공민으로서의 지위를 가지고 있다가 일정 시점에 외국인으로 지위를 전환한 것으로 파악된다. 그리고 그러한 지위 변화는 시기에 관계없이 비교적 용이했던 것으로 이해된다. 이에 비해, 입북한 재중한인의 법적 지위는 어느 시점부터는 불가역적으로 된 것으로 김재은은 서술하고 있다. 이 차이를 가능하게 한 근거는 무엇일까? 종족성을 달리하는 두 집단의 성원을 구별하는 “카드와 코드”는 무엇이었을까?

3) 북한이탈주민과 재외동포

북한이탈주민은 재외동포 연구의 밖에 위치한다. 그들은 외국국적동포가 아니며 『북한이탈주민의 보호 및 정착지원에 관한 법률』이 규정하는 “보호” 및 국적법상의 국적판정을 통해 곧바로 국민으로 인정되기 때문이다. 그렇기 때문에 김재은의 연구가 이를 다루지 않음은 이상하지 않다. 그러나 북한이탈주민이 무슨 근거로 대한민국 국민으로 취급되는지, 그렇게 취급되게 된 법과 행정의 경위가 어떠한지는 대한민국의 공식적 시선 속에 초국경 한인이 어떻게 인지되는지를 이해하는 데 결정적인 단서를 제공한다. 북한 공민의 대한민국 국민 지위를 최초로 설명한 이영순 판결은 단지 북한이탈주민의 지위를 선언하는 데 그친 것이 아니다.⁴⁸⁾

근래 문제되는, 남한을 거부하고 제3국을 선택하는 북한이탈주민의 지위는 대한민국 국적을 거부하는, 그래서 무국적자로 취급되는 재일 朝鮮籍 한인의 지위

47) 정인섭 · 박정해 · 이철우 · 이호택, 2009 『무국적자 관리 및 체류질서 확립을 위한 제도 연구』, 법무부 연구용역보고서; 이호택 · 이철우, 2011 『추상적 국민, 구체적 국민, 무국적자: 북한이탈주민의 지위와 신원』 『한국이민학』 2-1, 5-41면.

48) 대법원 1996.11.12. 선고 96누1221 판결.

와 동일한 구조를 가지고 있다는 점에서 저서 제2장의 주제와 밀접한 관련이 있다. 김재은이 거론한 것으로 추정되는 정영환 사건은 북한이탈주민의 지위를 해석하는 것과 같은 맥락에서 접근할 필요가 있다.⁴⁹⁾

입북하여 북한 공민이 된 재중한인의 지위도 법적으로는 미묘한 문제를 수반한다. 북한의 법적-행정적 조치의 효력을 대한민국이 승인할 수 없고, 북한인의 대한민국 국민으로서의 지위는 대한민국 국적법에 따라 판단하기 때문에 그를 다른 북한인처럼 대한민국 국민으로 취급할 수 없을 것이기 때문이다.⁵⁰⁾ 물론 이 문제는 김재은의 저서에서 다루기보다는 통일 후를 전망하는 논의에서 다룰 만한 것이다.

4) 타 국가 거주 한인의 문제

김재은의 초국경 네이션 연구는 재일한인과 재중한인만을 소재로 삼고 있다. 그렇기 때문에 초국가적(transnational) 네이션이라는 용어보다 초국경(transborder) 네이션이라는 용어가 더 실감 있게 다가온다. 김재은은 그러한 용어 선택이 국경으로 분절된 세계에서 그것을 넘어서는 네이션의 재생산이 이루어지고 있음을 강조하기 위함이라 밝히고 있다(8면). 그러나 “초국경”이라는 용어는 어감상 인근국 사이의 관계를 함의한다. 아무튼 김재은은 구소련한인과 재미한인은 이 저서의 탐구 대상으로 삼고 있지 않다.

구소련한인은 이주의 역사적 배경에서 재중한인과 공통된 면이 있지만, 김재

49) 저서 239면에서 이름의 명시나 인용 없이 언급한 사건이 이 사건으로 추정된다. 서울행정법원 2009.12.31. 선고 2009구합34891 판결; 서울고등법원 2010.9.28. 선고 2010누336 판결; 대법원 2013.12.12. 선고 2010두22610 판결. 朝鮮籍 재일동포 정영환은 대한민국을 국적국으로 등록하고 대한민국 여권을 사용하기를 거부하면서 한국 정부로부터 여행증명서를 발급받아 한국에 입국한 경험이 있었으나 2009년 여행증명서의 발급을 거부당하자 이를 다투는 행정소송을 제기했다. 서울행정법원은 여행증명서발급거부처분이 위법하다고 판단하여 이를 취소했으나 서울고등법원은 원심을 취소하고 청구를 기각하면서, 정영환을 외국인에 준하는 무국적자로 취급하여 여행증명서 발급 여부에 대한 행정청의 재량을 폭넓게 인정했다. 대법원은 조선적 한인이 무국적자임을 명시적으로 선언하지는 않았으나 원심의 판단을 정당한 것으로 보고, 조선적 한인이 대한민국 국적을 보유한다는 주장을 담은 상고이유를 배척함으로써 간접적으로 조선적 한인이 무국적자임을 인정했다.

50) Chulwoo Lee, 2015 *op. cit.*

은의 관심에 따르면 만주국을 통해 심화된 일제의 인프라권력의 대상이 된 재중 한인과 차별화되며, 나의 관심에 따르면 일찍이 소련 공민의 지위를 부여받았다는 차이가 있다. 그 후에 발생한 지리적 이격이 초국경 실천을 제한하는 중요한 조건이 되었다는 점도 두 집단에 차이를 가져온다. 그러나 초국경 네이션을 합리화하는 아이덴티티 담론을 생산하는 데 이들이 중요한 소재로 활용된다는 점을 간과해서는 안 된다.

재미한인은 아이덴티티의 정치보다는 이익의 정치, “누가 무엇인가”보다는 “누가 무엇을 얻는가”의 견지에서 접근되는 경향이 있다. 흥미로운 것은 한국의 초국경 네이션 전략의 존재이유 또는 정당화 근거는 민족이산의 비극 등 정서를 자극하는 상징으로부터 도출되지만 중요한 정책은 재미한인의 이해관계와 요구에 의해 추동되는 경우가 많다는 점이다. 이 역시 “도구주의의 원초주의적 옹호”라 볼 수 있다. 이 아이러니는 초국경 멤버십 정치를 논할 때 주목할 만한 현상이 아닌가 한다.

5) 초국경 네이션 전략과 국제관계

김재은은 인구에 대한 국가의 시선을 심화하고 개인에 대한 신원 정보를 확충하는 근대국가의 인프라권력의 강화가 균질적인 행정력과 기법을 구비한 국가들로 구성된 국제체제와 상호조건관계에 있음을 효과적으로 보여준다. 초국경 멤버십 정치는 그러한 국제관계에 터잡고 있다. “공식적 분류와 문서화 실무는 개인들과 해당 국가의 수직적 관계만을 규정하는 것이 아니라 수평적으로 分節化된(segmented) 글로벌 국제관계에서 그들의 자리를 규정한다.” “국가를 가로지르는 행정 실무의 표준화, 조정과 조율은 국경을 넘어 집단을 만들어내는 ‘故國(homeland state)’의 권력을 확립하고 인증하는 데 결정적으로 중요하다”(19면). “한 국가와의 주관적 동일시와 무관하게, 그 국가에 의해 인증된 관료적 인격(bureaucratic persona)을 채택하는 것, 그리고 이 특정의 신원이 국경의 안과 밖에서 올바르게 일관되게 문서화되었음을 확실히 하는 것, 다시 말하자면 국제체제 속에서 판독가능한(legible) 주체가 되는 것은 이동성의 면에서 과거와 비할 수 없을 정도로 중요한 것이 되었다”(124면).

혈연국은 동포의 거주국의 공적 문서에 의존하여 그들의 신원을 확인한다. 여권, 출생증명서, 공민증, 戶口簿, 常主人口登記表, 외부에 유출될 수 없는 檔案에 기재된 정보 등 거주국이 생산해내는 다양한 입증자료가 활용된다. 이동하는 인구의 관리를 위해 가동되는 복수 국가의 통치성, 한 국가의 통치성이 다른 국가의 통치성에 의존하는 현상을 나는 초국가적 통치성(transnational governmentality) 또는 상호통치성(inter-governmentality)이라 명명한 바 있다. 무엇보다 중요한 것은 거주국의 인구 분류(taxonomy) 시스템이 혈연국의 초국경 네이션을 구축하는 데 바탕을 이룬다는 점이다. 조선족과 고려인이라는 종족 범주가 중국과 러시아, 구소련, 중앙아시아 국가들의 분류에 의해 재생산되며 한국은 그에 의존하여 재외동포를 경계짓고 누가 그 집단에 속하는지를 판별하는 것이다.⁵¹⁾

이러한 국제적 차원의 통치성은 한편으로는 조율과 협력에 의존하지만 다른 한편으로는 경쟁과 배신, 전략적 공방을 수반한다. 상대국의 행정력을 불신하여 그 나라에서 생산한 문서의 효력을 부정하기도 하고, 정보의 흐름을 고의적으로 차단하기도 한다. 위장결혼임이 밝혀져 귀화허가가 취소된 결혼이민자의 국적회복에 협조하지 않음으로써 그를 체류국에 방치하기도 하고, 반대로 상대국에 귀화하여 국적을 자동상실하였음에도 불구하고 호구 정리를 늦추어 사실상의 이중국적자로 행동할 여지를 주기도 한다. 일본의 실무에서 보듯이, 귀화자의 신원을 출신국에 통보함으로써 상대국의 손에 의해 국적이 정리되도록 유도하기도 한다. 김재은의 연구는 이러한 통치성의 국제적 차원 및 거기에서 작동하는 국가 및 행위자의 전략을 솜씨 있게 형상화한다.

초국가적 멤버십 정치의 국제적 차원은 통치성의 정치에 앞서 주권의 정치에 대한 분석을 요한다. 김재은의 연구에서 이 문제는 한국과 중국, 북한과 중국, 한국과 일본, 북한과 일본의 관계의 맥락에서 언급되고 있다. 그러나 이 문제와 관련하여 우리에게 익숙하게 기억되는 사건들을 망라하여 다루고 있지는 않으며, 이스라엘-유럽, 이탈리아-아르헨티나, 헝가리-세르비아, 불가리아-마케도니아 등 비교 가능한 사례를 열거하는 이상으로 이 문제의 구조에 접근하고 있지는 않다. 재외동포법 입법 당시 중국이 보인 태도는 초국경 민족주의의 위협성과

51) Chulwoo Lee, 2012 *op. cit.*

한계에 대한 관심을 자극했다. 같은 시기 유럽에서는 트란실바니아 마자르인을 둘러싼 헝가리와 루마니아의 분쟁, 헝가리와 슬로바키아의 갈등, 루마니아와 우크라이나 및 몰도바의 마찰 등 여러 사례들이 발생했다. 그 후 남오세티아와 압하지아를 둘러싼 러시아와 그루지아의 분쟁은 무력충돌로 이어지기까지 했다. 인적 경계와 영토적 경계를 새로이 정하려는 공세적 주권 행사, 타국의 국민을 자국민으로 편입하려는 이중국적 정책, 국적에 미치지 않는 새로운 법적 지위(에스니즌십)의 창설에 의한 편입 등 여러 전략이 구사된다.⁵²⁾ 초국가적 멤버십 정치에 이러한 주권의 중첩과 마찰의 현실을 포착해야 한다.⁵³⁾

주제어 : 민족, 민족주의, 내셔널리즘, 종족성, 국경, 초국경 네이션, 시민권, 디아스포라, 재외동포, 북한

52) 이철우, 2005 『재외동포의 법적 지위를 규정하는 두 가지 방식: 한국과 멕시코의 비교』 『성균관법학』 17-1, 513-530면; 이철우, 2008 『주권의 탈영토화와 재영토화: 이중국적의 논리』 『한국사회학』 42-1, 27-61면; 이철우, 2013 앞의 논문.

53) 김재은이 이 점을 간과하고 있다고 말하는 것은 아니다. 앞에서도 언급했듯이, 그는 주권의 정치를 멤버십 정치의 중요한 차원으로 취급하고 있다. 주권의 정치에 대한 관심이 두드러진 연구의 예를 들면, Brubaker and Kim, *op. cit.*